복지분야 수탁시설 특정감사 결과(노인복지관)

Ⅰ 감사개요

○ 기　　간 : 2019. 7. 3.(수) ~ 7. 5.(금)(3일간)

○ 감사범위 : 2015. 1. ~ 2018. 12.까지 처리한 업무일체

○ 감사반 편성 : 기획감사관 외 4명

○ 감사중점내용

- 이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감독부서의 시설에 대한 제도운영, **지도.감독 적정여부**
- **직원채용 및 관리** 등 일반행정 업무처리 적정여부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적정여부
- 시설 **개별법령 및 자체규정 등 준수여부** 등 운영전반

Ⅱ 감사 결과 및 처분계획

❑ 총 지적건수 : 8건

○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시 설 명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계	주의	시정	현지시정 등	건	금액(원)
노인복지관	**8**	7	1	-	-	-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처분내용

연번	제 목	감사결과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8건**	**주의(7) 시정(1)**	**-**	**-**	
1	예산 총계주의 원칙 위반	**주의**	-	-	
2	차량운행일지 관리 소홀	**주의**	-	-	
3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관리 소홀	**주의**	-	-	
4	개인정보 수집제한 업무 소홀	**주의**	-	-	
5	세입예산 이월 부적정	**주의**	-	-	
6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 부적정	**주의**	-	-	
7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 재무.회계 규정 미준수	**주의**	-	-	
8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시정**	-	-	

처분지시서(1)

【제　목】 예산 총계주의 원칙 위반

【현　황】

(단위 : 천원)

년도	지출금액	지출항목	적요	세출예산 편성 여부
2015	4,748	예비비 및 기타	보조사업 반환금	미편성
2016	90,527	잡지출	사업비 이자 반환	미편성

※ 증평군 노인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지적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7조(세입 · 세출의 정의) 및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증평군노인복지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5년 보조사업 반환금과 2016년 사업비 이자 반환금을 지출하면서 세출예산에 미편성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증평군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및 관련법령에 의한 예산 편성 업무를 추진하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지시서(2)

【제　목】 차량운행일지 관리 소홀

【지적내용】

○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서는「증평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13조(관리대장 등 작성·비치)에 의거 차량운행일지를 비치하고 운행결과에 대하여 매일 결재를 득하여 관리하고 있음.

○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는 차량운행일지를 비치하고, 관리하면서 운행일지 결재를 한 달에 한 번 득하여 관리하는 등 차량운행일지 관리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증평군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증평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운행결과에 대하여 결재 확인을 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지시서(3)

【제　목】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관리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적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41조의2(후원금의 범위 등)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6. 후원금의 관리에 따라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는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의 후원금을 유형에 따라 지정, 비지정으로 구분하여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관리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증평군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후원금 유형에 따라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를 작성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지시서(4)

【제 목】 개인정보 수집제한 업무 소홀

【현 황】

○ 수집목적 : 증평군 노인복지관 후원회 CMS 신청

○ 수집방법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 수집기간 : 2015. 06. ~ 현재

○ 작성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등에 동의
- 동의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후원자의 관계 등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 관련 법령 근거없음

【지적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1]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 각 호의 경우[2]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 안내에 따르면 지자체와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

1)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관리·감독 실시하는 한편 입소/이용자, 후원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항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그러나 증평군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작성의 첨부서류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개인정보 보호법』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안내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전 서식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후원인으로부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재수집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증평군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증평군노인복지관에서는 향후 후원회 CMS 신청서 작성 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안내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지시서(5)

【제　목】 세입예산 이월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년도	이월금액	이월항목	이월항목	사유
2015	161,806	○ 자체수입 및 후원금 ○ 노인복지관 사업	07-71-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2016	90,527	○ 자체수입 및 후원금 ○ 노인복지관 사업	07-71-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2017	99,000	○ 자체수입 및 후원금 ○ 노인복지관 사업	07-71-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2018	12,497	○ 자체수입 및 후원금 ○ 노인복지관 사업	07-71-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 증평군 노인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지적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법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제3항 제1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5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세입 ·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증평군노인복지관에서는 2015년~2018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예산과목을 편성함에 있어 자체사업 및 후원금과 노인복지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노인일자리사업 및 건강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로 판단하여 전년도이월금[3]으로 세입항목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에 대한 이월금은 oo이월사업비[4]의 세입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여 전년도이월금과 사업비에 대한 이월금으로 반드시 구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이 하여 부적정하게 편성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증평군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증평군노인복지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표5 07-71-7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표5 07-71-713 oo이월사업비(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oo사업의 이월된 금액)

처분지시서(6)

【제　목】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 부적정

【현　황】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증평군노인복지관 ▣▣▣▣ ▣▣ 설치

◯ 사 업 비 : 24,700천원

◯ 사업내용 : ◍◍◍◍◍◍(◧◧◧◧◧ **개, ◫◫◫◫◫ &&개)

◯ 납 품 일 : 2016. 3. 17

◯ 계약상대자 : ㈜◓◓◓◓◓◓◓

◯ 계약방법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이면기재사항 승낙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제123조(계약의 체결) 준용

【지적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5]를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 그러나 증평군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한 ▣▣▣▣ ▣▣ 설치 사업은 예정금액 24,700천원(부가세포함)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금액기준 용역·물품·기타사항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해당하여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위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계약서 작성 생략 및 이면계약사항 승낙 등으로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증평군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증평군노인복지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지시서(7)

【제　목】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 재무·회계 규정 미준수

【현　황】

○ 관련근거 :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 재무・회계 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현　　황 : 2015 ~ 2018 회계처리 업무 전체

연번	건 명	관련법
1	물품구입 대가지급 지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신용(체크)카드 사용 및 관리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3	지출사무 운영 소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증평복지재단 재무회계 규정
	회계서류 기재사항 부적정	
4	지출증빙서류 미흡 (사본첨부, 회계서류 누락)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지적내용】

○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시설은 이 규정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처리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위 법령 및 규정 등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 신용카드 발급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서명란에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 증평군 노인복지관에서는,

1. 대가 지급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대가지급을 지연하거나, 특히 정수기 임차료의 경우, 고지서 납부기한을 수일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다수 발견되었음.
2.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할 신용카드 발급대장(비밀번호 포함)에 2015 ~ 2017년 기간 내 발급된 카드내역이 누락되어 있고, 2015 ~ 2018년 전반에 걸쳐 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에 실 사용자의 소속, 서명이 없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채 지출하였음.
3. 노인복지관장의 연가기간(2018. 8. 13. ~ 8. 14.)중에도 해당기간 내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관장의 도장을 날인한 채 지출한 사실이 있음.
4. 이 밖에도 회계처리시 첨부할 증빙서류 일부 또는 일체 누락, 증빙서류 원본원칙 미준수, 사전품의금액을 과도하게 산출한 품의서 결재 등 회계서류 작성 관리에 있어 전반적으로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증평군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회계 관련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회계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회계 관련 직원(담당자) 변경시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지시서(8)

【제　목】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현　황】

○ 관련근거 :「소득세법」및 같은법 시행령

○ <표 1> 기타소득(강의료, 자문료 등)의 원천징수 기준

구　　분	~ 2018. 3월	2018.4월 ~ 12월	2019. 1월 ~	비　　고
지 급 액	250,000원	166,666원	125,000원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최저를 초과할 시 소득세 원천징수
필요경비율	80%	70%	60%	
필요경비	200,000원	116,666원	75,000원	
기타소득금액	50,000원(과세최저한)			
원천징수비율 (지방소득세포함)	4.4%	6.6%	8.8%	
소 득 세	0	0	0	

○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현황 : 총 25건, 368,280원 <표 2>별첨참조

【지적내용】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구분되며, 동조 제19호 가목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에 따르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018. 4월 기준으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8. 3월까지는 100분의 80

○ 따라서, 증평군 노인복지관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려면, 소득세 법령에 따라 과세최저를 초과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강사에게 실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어야 하나,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25건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령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아, 총 368,280원의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증평군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 시 정

- 내 용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급 관련 원천징수 미이행 분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추징 368,280원(25건)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표 2>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현황

프로그램명	강사명	지급일자	지급건명	지급액(a)	필요경비(b)	소득금액(a-b)	소득세	주민세
계		25건		5,580,000	3,906,000	1,674,000	334,800	33,480
4월 평생교육 프로그램	◧◧◧	2018.5.9.	노래교실	240,000	168,000	72,000	14,400	1,440
	▣▣▣	2018.5.9.	영어	240,000	168,000	72,000	14,400	1,440
	▤▤▤	2018.5.9.	서예	240,000	168,000	72,000	14,400	1,440
	▥▥▥	2018.5.9.	한글교실	180,000	126,000	54,000	10,800	1,080
	▦▦▦	2018.5.9.	장구민요	180,000	126,000	54,000	10,800	1,080
	▧▧▧	2018.5.9.	홈패션	240,000	168,000	72,000	14,400	1,440
	▨▨▨	2018.5.9.	요가	180,000	126,000	54,000	10,800	1,080
	▩▩▩	2018.5.9.	난타	300,000	210,000	90,000	18,000	1,800
	▲▲▲	2018.5.9.	멋돌체조	240,000	168,000	72,000	14,400	1,440
	△△△	2018.5.9.	하모니카	240,000	168,000	72,000	14,400	1,440
	▶▶▶	2018.5.9.	오카리나	180,000	126,000	54,000	10,800	1,080
	▷▷▷	2018.5.9.	민화	180,000	126,000	54,000	10,800	1,080
	▼▼▼	2018.5.9.	기타교실	180,000	126,000	54,000	10,800	1,080
	◁◁◁	2018.5.9.	사진교실	180,000	126,000	54,000	10,800	1,080
5월 평생교육 프로그램	◀◀◀	2018.6.7.	노래교실	300,000	210,000	90,000	18,000	1,800
	◆◆◆	2018.6.7.	영어	300,000	210,000	90,000	18,000	1,800
	◇◇◇	2018.6.7.	서예	240,000	168,000	72,000	14,400	1,440
	◈◈◈	2018.6.7.	한글교실	225,000	157,500	67,500	13,500	1,350
	◉◉◉	2018.6.7.	홈패션	180,000	126,000	54,000	10,800	1,080
	◍◍◍	2018.6.7.	멋돌체조	180,000	126,000	54,000	10,800	1,080
	◎◎◎	2018.6.7.	하모니카	300,000	210,000	90,000	18,000	1,800
	●●●	2018.6.7.	정보화심화	180,000	126,000	54,000	10,800	1,080
	◐◐◐	2018.6.7.	오카리나	225,000	157,500	67,500	13,500	1,350
	◑◑◑	2018.6.7.	기타교실	225,000	157,500	67,500	13,500	1,350
	◒◒◒	2018.6.7.	사진교실	225,000	157,500	67,500	13,500	1,350